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법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고시 개정 안내(2014-64, 65호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64, 65호(2014.5.2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4-58호, 2014. 4. 21.)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·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」 제5조 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62호, 2014. 4. 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※붙임 : 1. 고시2014-64호 고시전문 및 개정안

2. 고시2014-65호 고시전문 및 개정안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/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유소영 차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222 ( 2014.05.02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ysy@kha.or.kr